

「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3. 4. 29. 개정 판 (시행 2013. 3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71/compare?from=172&to=1316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4:5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설치) 본교의 기도주일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<u>기도주일위원회</u> 를 둔다.	제1조(설치) 본교의 기도주일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<u>사랑나눔주간위원회</u> 를 둔다.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. 1. <u>기도주일 순서 제반 사항</u> 2. <u>기도주일 기도반 및 연합찬양, 헌혈 등 학생활동 사항</u> 3. <u>기타 기도주일과 관련된 사항들</u>	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. (개정 2022-03-07) 1. <u>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</u> 2. 기타 관련 사항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, 교목부장, <u>학사지원팀장, 학생지원팀장, 총학생회종교부장 및 위원장이 초청하는 사람으로</u> 구성된다. (개정 2013-04-29) ② <u>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.</u> ③ <u>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된다.</u> (개정 2013-04-29)	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(위원장), <u>학생복지팀장(서기)</u> , 교목처장,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(1), 학사지원팀장, 교목팀장, <u>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, 총학생회종교부장, 연합찬양리더로</u> 구성된다. (개정 2013-04-29) ② <u>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.</u> ③ <u>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.</u> (개정 2013-04-29)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기도주일위원회"를 "사랑나눔주간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.

1.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
2. 기타 관련 사항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(위원장), 학생복지팀장(서기), 교목처장,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(1), 학사지원팀장, 교목팀장,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, 총학생회종교부장, 연합찬양리더로 구성된다.

-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.
-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